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58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민병덕・이강일・이수진

염태영 · 장철민 · 김기표

한민수 · 김재원 · 박희승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병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12(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경우

- 3.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

- 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 2.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주요 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3(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 28조의12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 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 2. 제28조의12제1항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의1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u><신 설></u>	제28조의12(인공지능 기술 개발
	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
	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
	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
	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익
	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
	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
	<u>려운 경우</u>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의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u> 이 네 이 영 영 그 또 경이 는 기 단</u>

- <u>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한</u> <u>경우</u>
- 3.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u>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u> 으로 하는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 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신 설>

- 2.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주요 내용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3(관리·감독 및 개인 정보 처리의 제한) ① 보호위 원회는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 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 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 2. 제28조의12제1항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
 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 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 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의12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 회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 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